



파견직원명부와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1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2년(와) 제22457호
판결 일자	2002. 12. 26.	판결 결과	원고 청구인용 (중간판결)
원고	일본인재서비스 회사		
피고	핸드헨즈 주식회사 외 2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민법		
영업 비밀 키워드 (Keyword)	파견등록 파견직원 명부, 파견 요구 고객의 이름, 주소, 구인 내용 등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교육		

02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회사, 법인, 단체 등에의 일반 노동자(인재) 파견 사업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도 원고 회사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회사와 노동자 파견사업 분야에서 경업관계에 있고, 원고 회사의 임원인 영업부부장이었던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또한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 A는, 피고 회사 영업부장에 취임했다.

원고 회사는 파견직원에 대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 번호, 근처 역, PC 기능, 취득 자격, 취업 실적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또 고객인 파견처 기업에 대해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채용 담당 부서, 채용 담당자, 구인 내용(요구하는 파견 노동자의 자격, 능력, 노무 내용, 인원수,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회사도 동일하게 파견직원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또 파견처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유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정보를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던 피고들의 비망록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원고 회사는 비밀정보는 직원카드라는 종잇조각에 기입된 장부의 형식으로도 존재하는데, 그 원본은 코디네이터가 귀가 시에는 책상 서랍에 넣어 놓았고, 이 캐비닛은 코디네이터의 사무실 책상에 가까운 장소의 벽에 세워져 있었던바, 잠겨 있지 않지만, 코디네이터의 책상 옆에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의 양해 없이 캐비닛을 열어 직원카드를 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불필요하게 된 파견직원의 직원 카드의 사본은 코디네이터 자리에 있는 바구니에 돌려 내 용지의 뒷면이 재사용되거나, 분쇄기나 소각에 의해 폐기되기도 했지만, 영업과원 중에는 이를 자신이 파일로 한 사람도 있었다. 원고 회사에서는 복사 매수를 기록하거나 복사 한 사본을 반환시키는 등은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직원카드에도 캐비닛의 파일에 '외부기밀', '반출 금지' 등의 기재나 첨치는 붙어 있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고객 정보, 파견직원 정보, 영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 유지 및 퇴직 후 2 년간의 경업금지를 계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B 및 피고A는 이 시기에는 이미 임원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파견원 책임자 연수회를 수강시키고 있으며, 이는 피고 B 및 피고 A도 수강하고 있었다.

파견사업소와 파견직원을 주선하는 역할은 영업과원이 담당하고 있고, 주선에 관한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과원은 자신의 수첩 등에, 비망록이라고 칭하는, 휴대 정보가 필요하였다.

04 판결 요지

피고 B 및 피고 A는 원고 회사 재직 중에 파견 직원이나 파견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망록으로서 자신의 수첩에 메모 해두고, 이것을 일상의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파견 직원 및 파견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은 피고 B 및 피고 A의 비망록에 의한 것이다. 영업과원이 휴대하고 있던 비망록은 파견 직원과 파견사업소의 일부에 대해 정보를 임시로 기재하는 것이고, 영업과원의 업무 내용에 따르면 필요상 부득이 한 이용 형태이지 이들이 계속 보유가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직원카드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코디네이터 또는 영업과원에 의해 복사기로 사본이 작성되어 영업과원이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복사본의 작성과 그 이용은 직원카드 중 몇 명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고, 또한 영업과원이 이러한 복사본을 계속 보유할 예정은 아니었다.

원고 회사는 파견직원과 파견사업소의 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연수 등을 통해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있었고, 해당 부서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 유지에 유의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 B 및 피고 A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 사이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할 당시 피고 B 등 두 명은 이미 임원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05 Key Point

비밀관리성의 확보를 위해 평소의 교육과 명문으로 된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작성의 대상은 임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